

사 천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

선 람	기 관 의 장

제424호 2015. 10. 29(목)

조 례

- 사천시 조례 제1299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----- 2
- 사천시 조례 제1230호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·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--- 3
- 사천시 조례 제1231호 사천시 청소년지도위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----- 5
- 사천시 조례 제1232호 사천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 ----- 8

규 칙

- 사천시 규칙 제599호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·관리 조례 시행규칙
일부개정규칙----- 10
- 사천시 규칙 제600호 사천시 환경미화 종사원 복무규칙 일부개정규칙 ----- 15

고 시

- 사천시 고시 제2015-156호 공유수면 점용·사용 변경허가사항 고시 ----- 23

회 람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사천시 / 편집 : 공보감사담당관 / ☎ 831-2215 / FAX 831-6011

사 천 시 공 보

제424(2)

조 례

사천시 조례 제1229호

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15년 10월 29일

사 천 시 장 송 도 근

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

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12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.

⑫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자녀의 학교 및 보육시설(관계법령에 따라 인가된 시설)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얻을 수 있다. 단, 자녀의 학교 및 보육시설의 초청장, 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사 천 시 공 보

제424(3)

조 례

사천시 조례 제1230호

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·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15년 10월 29일

사 천 시 장 송 도 근

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·관리 조례
일부개정조례

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·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급여” 를 “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학생이” 를 “초·중·고등학생이” 로 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기금의 재원) 기금은 다음 각 호를 재원으로 한다.

1. 시 출연금
2.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
3. 그 밖의 수입금

사 천 시 공 보

제424(4)

제10조제2항 중 “적정히” 를 “적절하게” 로 하고, “비치하고” 를 “비치하거나 전산으로 관리하고” 로 한다.

제15조 중 “학교별” 을 “대상별” 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사 천 시 공 보

제424(5)

조 례

사천시 조례 제1231호

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청소년지도위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15년 10월 29일

사 천 시 장 송 도 근

사천시 청소년지도위원 조례 일부개정조례

사천시 청소년지도위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자는” 을 “사람은” 으로 하고, “자” 를 각각 “사람” 으로 하며, 제2항 중 “각호의 1” 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 로 하고, “금치산자” 를 “피성년후견인” 으로 하며, “한정치산자” 를 “피한정후견인” 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자” 를 “사람” 으로 한다.

제3조 본문 중 “자” 를 “사람” 으로 하고, “당해” 를 “해당” 으로 하며, “사천시장(이하 “시장” 이라 한다) ” 을 “시장” 으로 한다.

사 천 시 공 보

제424(6)

제4조 중 “30인이내로” 를 “30명 이내로” 하고, “기타” 를 “그 밖에” 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각호” 를 “각 호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중 “기타” 를 “그 밖에” 로 한다.

제6조제3항은 삭제 한다.

제8조중 “각호” 를 “각 호” 로 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사 천 시 공 보

제424(7)

[별표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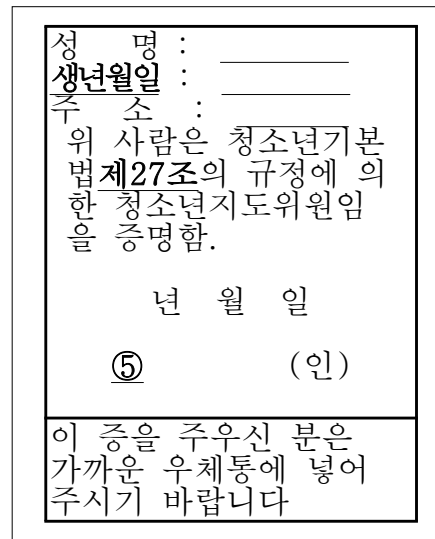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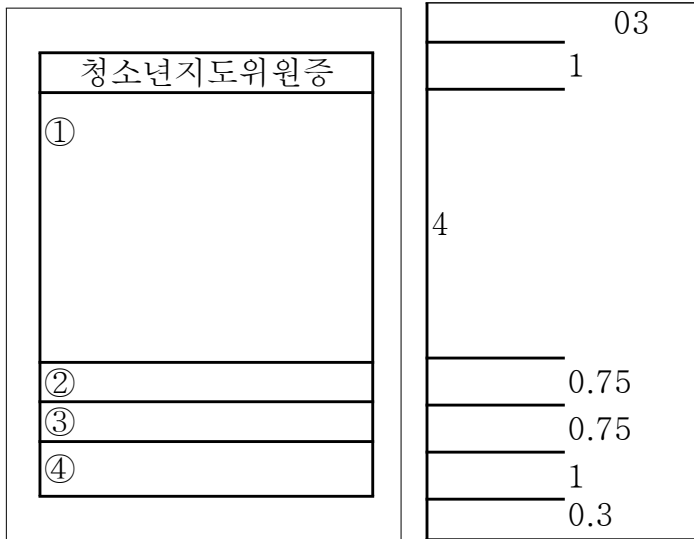
청소년지도위원증의규격·제식및기재사항(제7조관련)

<개정15.09. >

(앞면)

(단위 cm)

(뒷면)



(비고) 1.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/m²으로 한다.

2. 청소년지도위원등의 ① 부터 ⑤ 까지 위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.

- ① 사진(4.9cm×4cm)
-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
- ③ 성 명
- ④ 소속기관명
- ⑤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

사 천 시 공 보

제424(8)

조 례

사천시 조례 제1232호

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15년 10월 29일

사 천 시 장 송 도 근

사천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

사천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.

사천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사천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봉사하는 단체의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대상)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지원대상은 사천시모범운전자회, 사천시해병전우회(이하 “교통지도 봉사단체”라 한다) 등을 말한다.

제3조(교통지도) ①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과 보육시설의 장에게 보행약자가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정차 질서유지 및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·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 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사 천 시 공 보

제424(9)

② 시장은 각종 행사 시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통지도봉사단체 등에게 교통지도를 요청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.

제4조(지방보조금 지원) 시장은 교통지도 봉사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시 관내에서 실시되는 각종 축제 및 행사의 교통 질서계도
2. 교통약자 및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
3. 어린이 및 노인(장애인) 보호구역 질서계도
4. 다중집합 장소에서 교통계도가 필요한 경우
5. 교통계도가 필요하여 교통지도 지원봉사를 요구한 경우

제5조(지원신청 및 정산보고) ① 제4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교통지도 봉사단체는 사업시행 전에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교통지도 봉사단체는 「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에 따라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6조(지도·감독)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,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.

제7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「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에 따른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사 천 시 공 보

제424(10)

규 칙

사천시 규칙 제599호

사천시 조례·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·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15년 10월 29일

사 천 시 장 송 도 근

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·관리 조례
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

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·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, “이라 함은”을 각각 “이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사 천 시 공 보

제424(11)

1. “수급자”란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조성 금액을 결정하며, 조성목표액은 10억원 이상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과 제2항 중 “제12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4조에 따른”으로 각각 하고,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“250,000원”을 “300,000원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350,000원”을 “400,000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 하며, “자로”를 “학생으로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150,000원”을 “200,000원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250,000원”을 “300,000원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500,000원”을 “600,000원”으로 한다.

제5조 중 “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5조에 따라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제14조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16조에 따른”으로 하고, “자와”를 “학생과”로 하며, “자”를 “학생”으로 하고, “1개월후부터”를 “1개월 후 부터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에 의한”을 “제1항에 따라”로 하고, “추천 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”을 “추천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사천시생활보장위원회”를 “사천시 생활보장위원회”로 하고, “학교간·지역간의”를 “학교 간·지역 간의”로 한다.

사 천 시 공 보

제424(12)

제7조 중 “제15조의 규정에 의한” 를 “제17조에 따라” 로 한다.

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조(장학금 지급시기)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에 대한 장학금은 상·하반기 각 1회씩 총 2회를 해당 학년 종료 시까지 지급하되, 사정에 따라 일괄 지급 할 수 있다.

제9조제1항 중 “제17조제1항에 의한” 을 “제19조에 따라” 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기타” 를 “그 밖의” 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당해연도” 를 “해당연도” 로 하고, “3월중” 을 “3월 중” 으로 하며, “5월중에” 를 “5월 중에” 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의한” 을 “따라” 로 하고, “사천시장(이하 “시장” 이라 한다)” 을 “시장” 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의 규정에 의한” 을 “에 따른” 으로 하고, “에서 정한 바에 따라” 를 “에 따라” 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사 천 시 공 보

제424(13)

[별지 제1호서식]

장학금 신청서

○ 인적사항

보 호 자		장 학 생(특별 · 일반 장학생)			
주 소		학 교 명			
성 명		학 년	제 학년	학과	
생년월일		성 명	(한자)		
가 족 수	명	생년월일		보호자와 의 관계	

○ 가족사항

성 명	세대주와의 관계	생년월일	직 업	비고

○ 확인사항

장학금 지급대상	1. 소년소녀가장 () 2. 학교내외 학업 및 실기관련 대회입상자 () 3. 일반 학업성적 우수자 ()	장학금 기 수혜여부	
-------------	--	---------------	--

사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(장학금)을 지급받고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.

- 첨부 : 1. 학교장 추천서 1부.
2. 생활기록부 사본(또는 성적증명서) 1부.
3. 기타 입증서류(특별장학생인 경우 한함) 1부.

년 월 일

신청인 보호자 (인)
추천인 사천시 읍·면·동장 (인)

사천시장 귀하

사 천 시 공 보

제424(14)

[별지 제2호서식]

장학보조금 신청서

○ 인적사항

보 호 자		학 생			
주 소		학 교 명			
성 명		학 년	제 학년	학과	
생년월일		성 명	(한자)		
가 족 수	명	생년월일		보호자와 의 관계	

○ 장학보조금 내역

구 분	고지(견적)금액	지원신청액	비 고
수학 여행비			
교복 구입비			
기타 학비()			

사천시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(장학보조금)을 지급받고자 다음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.

- 첨부 : 1. 재학증명서(또는 학생증사본) 1통.
2. 고지(견적)서 1부.

년 월 일

신청인 인

사천시장 귀하

사 천 시 공 보

제424(15)

규 칙

사천시 규칙 제600호

사천시 조례·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환경미화 종사원 복무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15년 10월 29일

사 천 시 장 송 도 근

사천시 환경미화 종사원 복무규칙 일부개정규칙

사천시 환경미화 종사원 복무규칙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.

제명 「사천시 환경미화 종사원 복무규칙」을 「사천시 환경공무직 복무규칙」으로 한다.

제1조 중 “환경미화 종사원”을 “환경공무직”으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사 천 시 공 보

제424(16)

1. “청소반장” (이하 “반장” 이라 한다)이란 일반직 공무원 중 운전을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환경공무직(이하 “공무직” 이라 한다)의 청소업무를 관리·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.

2. “공무직” 이란 쓰레기 수거·운반, 시가지 가로청소,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집·운반·선별, 음식물류폐기물 수거·운반, 매립장 청소 등 환경미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이 규칙은 공무직 근로자의 복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,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근로기준법」 및 「사천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」을 따른다.

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삭제한다.

제2장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3장 제9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23조 본문 중 “종사원” 을 “공무직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제목 및 같은 호 가목 중 “감독·반장” 을 “반장” 으로 하며, 같은 호 라목 중 “종사원” 을 “공무직” 으로 하고,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나. 공무직의 작업상황 및 장비 등을 총괄 관리·감독한다.

제23조제2호 제목 중 “운전원·운전미화원” 을 “운전공무직” 으로 하고,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3호 제목 중 “승차미화원”

사 천 시 공 보

제424(17)

을 “차량승차공무직”으로 하며, 같은 호 마목 중 “운전원”을 “운전공무직”으로 한다.

제23조제4호 제목 중 “가로청소미화원”을 “가로청소공무직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제목 중 “대형폐기물수거미화원”을 “대형폐기물수거공무직”으로 한다.

제23조제6호 제목 중 “음식물류폐기물수거미화원”을 “음식물류폐기물수거공무직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7호 제목 중 “매립장청소미화원”을 “매립장청소공무직”으로 한다.

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4조(반장 임명) ① 시장은 공무직 복무 및 청소 효율화를 위해 반장을 둘 수 있다.

② 관리부서장은 운전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반장으로 임명한다.

③ 관리부서장은 반장이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체할 수 있다.

제25조 중 “시장”을 “관리부서장”으로 하고, “종사원”을 “공무직”으로 한다.

제26조제1항 중 “종사원”을 “공무직”으로 하고, “소속부서장”을 “관리부서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종사원”을 “공무직”으로 한다.

사 천 시 공 보

제424(18)

제29조 중 “시장” 을 “관리부서장” 으로 하고 “종사원” 을 “공무직” 으로 한다.

제32조제2항 중 “종사원” 을 “공무직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청소종사원” 을 “공무직” 으로, “행사 등” 을 “행사, 다수 민원 등” 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은 삭제한다.

제34조 중 “미화원” 을 “공무직” 으로 하며, “별표 2” 를 “「사천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」 별표 2” 로 한다.

제7장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제20조 본문 및 제21조 본문 중 “청소종사원” 을 각각 “공무직” 으로 한다.

제3조, 제4장 제목, 제18조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, 제19조, 제22조, 제28조, 제30조제1항 및 제2항, 제31조, 제33조, 제46조제1항 및 제2항, 제47조, 제48조제1항 중 “종사원” 을 각각 “공무직” 으로 한다.

제27조, 제37조, 제39조제1항, 제45조, 제49조제1항 및 제2항, 제50조제1항, 제2항 및 제3항 중 “미화원” 을 각각 “공무직” 으로 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하고,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삭제한다.

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제32조제2항 별표 1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사 천 시 공 보

제424(19)

【별표 1】

환경공무직 근무시간(제32조 관련)

구 분		근 무 시 간	비 고
연중 (1월~12월)	평 일	<u>08:00 ~ 17:00</u>	<u>12:00 ~ 13:00(중식 시간)</u>
	토요일	<u>08:00 ~ 11:00</u>	

※ 천재지변, 작업 여건 및 작업량, 각종 행사 등에 따라 조정 할 수 있음

사 천 시 공 보

제424(20)

[별지 제5호서식]

청 소 일 지		감독원 (반장)	담당자	담 당	소 장	결 재	
년 월 일(요일) 날짜:							
지시 사항		조치 내용					
근	1. 환경공무직 근무상황 (단위 : 명)						
	구 분	계	가로청소	승차원	매립장	사고내용	
	총 원					휴 가	
	근무인원					병 가	
	사고인원					결 근	
무	2. 청소 및 재활용 차량운행 (단위 : 대)						
	계	수 거 차 량					재활용차
		압착차	진개덤프	롤온차	소형운반차	수화차	
내	3. 불결지역 청소 및 민원처리						
	장 소	내 용	동원인원(명)	수거량(톤)	문제점 및 대책		
용	4. 익일 청소활동 계획						
특기 사항 (보고)							

사 천 시 공 보

제424(21)

[별지 제9호서식]

환경공무직 관리카드

(앞면)

소 속				공 무 직 최초근무일				사 진
성 명		주민등록번호		호주 및 관계				
				의 ()				
주 소				전 화		자택		
				특기		취미		
병역사항		군별	계급	군번	병과	입대일	전역일	
재산상황		주택	백만원	그 외 부동산	백만원	동산	백만원	
학 력	부 터		까 지		학교명 및 전공학과			
자 격 면 허								
년 월 일		종 별		년 월 일		종 별		
경 력	근무부서		채용일	임금일당	상여금	담당업무	비 고	
기타사항								

사 천 시 공 보

제424(22)

[별지 제9호서식] 뒷면

경력 및 발령사항					
근 무 기 간 (발 령 일 자)	근 무 처 (근무부서)	직 위	담당업무 (분 야)	기타사항	기록자(인)
본인	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서약함. 년 월 일 성 명 : (인)		소 속 기관장	본표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함. 년 월 일 사 천 시 장 (인)	

사 천 시 공 보

제424(23)

고 시

사천시 고시 제2015-156호

공유수면 점용·사용 변경허가사항 고시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·사용 변경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.

2015년 10월 29일

사 천 시 장

1. 점용·사용 변경 허가번호 : 제2015-5호
2. 점용·사용 변경 허가년월일 : 2015년 10월 27일
3. 점용·사용의 장소
 - 경남 사천시 송포동 1344-1번지선 공유수면
4. 점용·사용 허가 면적
 - 1,302㎡
5. 점용·사용 목적
 - 수상동력기구 접안용 관리사 및 휴게음식점
6. 점용·사용 변경 허가사항
 - 점용·사용 기간
 - 당초 : 2012.11.01. ~ 2015.10.31.
 - 변경 : 2015.11.01. ~ 2017.08.24.

사 천 시 공 보

제424(24)

7. 점용·사용 변경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·주소

가. 성 명 : 문관백

나. 주 소 : 경남 사천시 용현면 용현로 87, 101동 903호 (덕산아파트)

8. 점용·사용 변경 허가조건 : 붙임 참조

사 천 시 공 보

제424(25)

허 가 조 건

1. 송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 시행 등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20조(공익을 위한 처분)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·사용 허가가 취소 될 수 있습니다.
2. 공유수면 점용·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폐지될 경우 피허가자 부담으로 공유수면을 원상회복 조치하여야 합니다.
3. 휴게음식점 운영 시 발생하는 오수 등은 집수통에 수거하여 반드시 육상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.
4. 시설물 운용 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및 일반 쓰레기 등을 해상에 무단 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, 주변해역을 주기적으로 청소하여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여야 합니다.
5. 선박의 이·접안 및 유류 급유 시 유류유출 사고를 대비하여 유흡착포 등 해양오염방제 장비 등을 구비하여야 합니다.
6. 권리자가 있을 경우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, 또한 동 시설운용과 관련한 해역이용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, 문제 제기 시 적극적인 해결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.
7. 운영 중 매장문화재가 확인될 경우 「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에 따라 발견 즉시,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발견된 사실을 즉시 우리 시(문화정보과)에 알려야 합니다.
8.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상레저사업등록 및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득한 후 허가목적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하며, 목적 외의 사용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.
9. 상기 사항을 위반할 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률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취소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, 허가조건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.